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5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윤재옥・김기웅・유용원

이인선 · 강대식 · 서천호

최보유 • 김성원 • 권영진

엄태영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법률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이나 제17조의2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1
	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이
	나 제17조의2에 따른 다른 행
	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
	견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형
	<u>가를 실시하고 사후규제영향평</u>
	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